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고시 중 “보청기처방 및 검수확인”에 대한 한국청능사협회 의견서

2018-10-26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보장급여비 지급청구서

<표준코드 추가> : 찬성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보장구 처방전

<신설> 반대 : 보장구 처방전에서 보청기 항목 삭제하고 보청기 처방은 복지카드(청각장애)로 대체

이유 : 보장구처방전에 안경과 마찬가지로 보청기처방 자체가 불필요함. 병의원과 건보공단의 엄격한 절차(3회의 기도 골도 검사 및 1회의 뇌파검사)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당연히 보청기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청기 처방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장애판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 돈과 시간 낭비의 이중 고통을 주게 됨.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인에게는 그 고통이 더 심화됨. 청각장애등록일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도 선진국처럼 청각장애인에게 추가 청력검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 될 것임.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신설> 반대 :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별도로 신설, 현 보장구 검수확인서 폐지

이유: 보청기는 안경처럼 일반보장구와 달라서 최근 제정된 국가표준(KS I 0562)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근거하여 보청기전문가 또는 청능재활전문가 1인 이상 근무하고 기본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보청기전문업소 또는 병의원중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검수확인을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신설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각검사외에 표준화된 만족도 검사(KS I ISO 0562 부속서 B 참조)를 포함하여 보청기 착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정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상기의 검수절차는 보청기를 청각장애인에게 합부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실제로 진행하였는지는 서류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샘플조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급여금의 지급중단은 검수확인서 위조 또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반품할 경우에만 시행해야 할 것임.

한국청능사협회 종합의견 및 입장표명

○ **종합의견**: 한국청능사협회는 이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중 “보청기처방 및 검수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종합의견을 제안하며 다음 2가지 안중 하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안: 아래와 같이 개정안 수정

-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처방전에서 보청기 내용 삭제하고 보청기 처방은 청각장애인 등록으로 대체 (첨부 1)
- **검수확인서**: 기존 보장구 검수확인서에서 보청기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의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설 (첨부 2)

(2) 제2안: 이번 개정안에서 보청기 관련 신설 내용은 삭제하고 다른 보장구 부분만 개정한뒤, 보청기 부분(급여신청업소 제한,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설 등)은 추가 검토하여 신규 “고시” (예: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제정

○ 세부 제안 사항:

1)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국가표준 KS I 0562 (음향-보청기적합관리 부속서 A)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167호 에서 제시하는 교육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가가 1인 이상 근무하고, 국가표준에서 제시하는 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업소 또는 병원 중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검수 확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2) 검수확인은 국가표준 KS I 0562(음향-보청기적합관리)에서 제시한 기본 절차를 따르며, 구체적 내용은 각 국가표준에서 제시한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 (1) **순음청력검사** : 국가표준 KS I ISO 8253-1 (음향-청력 검사 방법-제1부 : 기본 순음 공기 및 골전도 청력 역치 측정법)
- (2) **어음청각검사** : 국가표준 KS I ISO 8253-3 (음향-청력검사 방법-제3부 : 어음청각검사)
- (3) **청능훈련** : 국가표준 KS I 0562 (음향-보청기적합관리 5.10)
- (4) **음장측정** : 국가표준 KS I ISO 8253-2 (음향-청력 검사 방법-제2부 : 순음과 협대역 신호에 의한 음장 청음 시험)
- (5) **만족도 평가** : 국가표준 KS I 0562 (음향-보청기적합관리 부속서 B)

참고 1. 국가표준 (KS I 0562) 보청기적합관리 제정고시(2018. 9.21) : 보청기적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보청기업소의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교육)기준 및 윤리기준을 명시.

참고 2.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2018. 9. 12)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근거 "청능재활"분야(청각검사, 청능훈련, 보청기평가및적합 등 포함)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학부(청능재활 교과목 14개 42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7개 과목 21학점 이상)에서 필수학점을 이수한자로 한정.

○ 청능사협회 입장표명:

본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은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이며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에 있음을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개정 내용은 보청기 처방과 검수 시 불필요한 검사 항목만을 추가하여 이미 청각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검사를 받게 하는 불편함과 검사 비용만 추가되는 개정임. 이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양질의 보청기 급여, 사후관리 및 검수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의 대책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개선이며 누구를 위한 사후 관리인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보청기 전문가”가 표준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통해 올바른 보청기 사후 관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빼앗는 졸속 개정임.

비윤리적인 보청기업소와 의료기관 및 정부행정기관의 편익을 위한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됨. 현재 보청기급여의 문제점이 사후관리와 인력 관리의 부재에서 기인되었음을 바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절차를 추가하지 말고 보청기전문가(국가표준 KS I 0562 근거)와 청능재활 전문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근거)의 역할을 검수과정에 추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임.

보청기급여 관련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난청의 진단 및 의료적인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청각장애”를 진단함으로써 의사 본연의 임무를 마치고, 청각장애인의 보청기선택, 상담, 청능훈련 및 "검수확인"은 국가표준에서 제시한 보청기전문가(청능사 또는 의사도 가능)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보청기업소 또는 병원에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이를

통해 윤리의식이 부족한 일부 보청기업소나 이비인후과의사의 부정수급을 상당히 줄이고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국민 세금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가 될 것임.

보청기 급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들이 보청기에 관심도 없었고 공식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최근에도 일부 의사들만이 세미나와 워크숍 정도의 교육을 받고 보청기를 취급하고 있음. 대부분의 성실한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은 치료하고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 보청기급여가 시작된 후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가 일부 비윤리적인 보청기업소와 결탁하거나 부인 또는 친지의 이름으로 보청기업소를 이비인후과 병의원 옆에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없이(대부분 보청기업소 또는 제조사 직원들이 보청기 적합을 수행하고 있음) 보청기업소 또는 제조사로부터 수익 또는 사례비를 챙기는 비윤리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처방전과 검수확인이 예고 고시에 있는 방식으로 강화되면 비윤리적인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청각장애인의 고통은 증대 될 것임.

이비인후과의사들과 일반소상공인이 최근 우리나라처럼 보청기시장에 관심을 갖는 선진국은 없음. 모든 선진국 또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보청기업소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큰 문제임. 하지만 보청기업소의 개설권을 당장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기회에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서비스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상기한 한국청능사협회의 의견과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람.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보청기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졸속 행정이 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람.

○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의 권리 존중(선택권, 편리함), 검사비용 및 시간 절약
- 비윤리적 이비인후과와 보청기업소 사이의 부정수급 문제의 감소
- 처방전 생략으로 건보공단의 업무감소 및 불필요한 검사비용에 대한 국민세금 낭비의 감소

○ 보청기 검수확인서 서식 제안

보청기 검수확인서의 서식은 (1) 청각장애인의 권익, (2) 행정 간소화 및 (3) 국민세금의 감소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첨부 1. 보장구 처방전에서 보청기 항목 삭제 및 보청기 처방은 청각장애인들
 특으로 대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 >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장애인 등록 전

①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장애등급
	장애등록일:	상태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급
	중복장애명	장애			장애등급
	장애등록일:	상태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급
③처방 보장구	품목			코드	
	자세 보조 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머리 및 목 지지대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검사 결과	전동휠 체어 또는 전동스 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비델지수, MBI 이용)	[]적합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적합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점				
	형태 분류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외 겸용)	[]등급 C (실외용)				
		[]전동스쿠터	[]등급 C (실외용)					
	미만	하지도수 근력검사	좌 ()등급, 우 ()등급		머리 (HEAD)			
		GMFCS			견갑 (SCAPULA)			
		영상의학 검사	Cobb's (도)		척추 (SPINE)			
			척추 전만 (도)		골반 (PELVIS) 고관절 (HIP JT.)			
자세 보조 용구	척추 후만 (도)		무릎 (KNEE) 족관절 (ANKLE JT.)					
	Hip migration index (%)							

보 청 가

구분

좌측

우측

고막 및 외이도 상태

평균순음 청력역차

※ 순음청력검사와 평균순음역차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15 이하	어음청력	어음명료도(%)	— %	— %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월	일
			(또는 인)	
			전문의 자격번호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목발·흰지팡이·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청기에 대한 처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력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위해 실시하였던 검사 결과를 기재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2. 보청기 검수확인서 청능사협회 제안 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개정>

보청기 검수확인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장애인 등록 전

람 급여신청자	번호	청각장애등급	급	장애등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상태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장애 상태	척수손상	[]완전 []불완전	장애등급		
보장구 보청기	품목	코드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의자→보조가 가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치료사	업소관리번호					
	[]자세보조용구-업소 대표자						
[] (KS I 0562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근거)							
보청기 전문가 검수 항목 □15 이하	착용 측	(), 우 (), 양측 ()	보청기 종류		보청기 착용 전 (음장검사)		
	평균순음청력역치 (6분법에 근거)		보청기 착용 전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어음청각검사 (일상대화음레벨 45 dB HL)	구 분	보청기 미착용		보청기 착용 (음장검사)		
		단어인지도 (검사 도구, 제시강도)	%	%	%	%	
		문장인지도 (검사 도구, 제시강도)	%	%	%	%	
	소음 하 어음청각검사 (검사 도구)						
	보청기 만족도	검사도구	보청기 미착용		보청기 착용		
			%	%	%	%	
보청기 착용 후 청능훈련		총 회				회당 분	
보청기적합 사후관리		전반적인 보청기적합관리(청능훈련 포함)에 대한 내용 기록과 계획수립(KS I 0562 참조)					
검수확인	(보청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보장구 보청기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가호) 보청기업소 또는 이비인후
과 병의원(사업자등록번호)

보청기전문가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서명 또는 인)

전문의 자격번호

1.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청기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청기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자+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자+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수리한 의자+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자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자+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인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체의 대표자가 하며, 업체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청력변화 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검수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조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검수확인 참고표

1.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응되는지
 -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여는지
 -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자패드와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처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이 어떠한지
 -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 나. 머리의 굴곡 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기를 보이지 않는지

~~·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자~~

6.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자~~
 -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자~~
-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자~~
 -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자~~
 - ~~다. 발목의 척측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자~~
 -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자~~
-